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0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 출 자: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3. 30. ~ 4. 18. / 접수의견 2건(미반영 2건)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자치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감면"을 "감경"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중 "구청장"을 각각 "자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8조중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7.	이 조 리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심 중 달	· 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단위:원)
1. 전주・ 공중 전주, 가로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상시설물 유선방송용 지국, 교통령	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 냥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내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 것		1년	1,850
	<u>^</u> 1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6,150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유스과 저 7	지름 0.1m 이하 가관, 농업 기관, 전기 이2m 이하			750
동신관, 가스 관, 송유관 (맨홀), 전력	스관, 종열 , 작업구 루구, 통신		1년	3,150
구, 그 밖에 사한 것	이와 유 <u>0.6m 이하</u>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 이 1m		4,850 6,4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Im		8,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2,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20,150
	지름 3.0m 초과			28,200
지중정착장	지름 0.1m 이하			1,150
커), 암거, 이와 유사히	그 밖에 지름 0.1m 조과 - 것 0.2m 이하			2,400
	지금 0.2m 조과 0.4m 이하			4,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 .1		7,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 이 1m	1년	9,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지름 3.0m 초과			42,250

	-1 4	.	.1 7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섬 년	* 물 '	의 종	뉴 		점용단위	기간단위	(단위:원)
광고판,	광고탑 간판(-	돌출간	2판, ·판을		설치한 것 기만 점용)	표시면적 1m²	1일	300
간판(돌출 간판을 포	제외한	<u> </u>		7]	타	표시면적 1m²	1년	81,350
함한다)· 사설안내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m²	1년	38,950
표지 · 현 수막 · 아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67,750
치, 그 밖 에 이와 유 사한 것	현	수	막		ト 종교행사 도로 일시 것	표시면적	1일	200
				기타	-의 용도	$1\mathrm{m}^2$		300
	0}		a۱	도	로횡단	표시면적	1년	162,700
	of .		치	기	타	$1 \mathrm{m}^2$	10	81,35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차터미널 • 화물터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미널·자 동차수리소	신		芒	3층인 건축물 점욧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 승강대 · 화 물 적 치 장·휴게소,	적 치			4층 이	상인 건축물	1 m²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급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진	• 출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기준	 단위	점용	豆
	점용물의 종류	-	점용단위	기간단위	(단위:	원)
5. 철도・궤도	E, 그 밖에 이와 f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4를	
6. 지하상가· 지 하 실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5를
·통로 그 밖에 이와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7을
유사한 것		3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9를
	공중 또는 지하여	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075를
	7] E	計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2를
7. 노점·자동 판매기·상	버스표판매대, 구	⁴ 두수선대	.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을
품 진 열 대,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8. 공사용 판 자벽, 발판,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300
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기 타		1m^2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9. 고가도로의	동차주차장・광장	하는 사무소·점포 ·공원, 그 밖에 이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2를
10. 제1호 내 지 제9호 외의 공작	농업 및 식물재 물 위탁판매	배, 어업 및 어획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을
물 · 물 건 및 시설	주 택		점용면적	114	토지가격에 를 곱한 금	
	구청장이 지정 차양 또는 비가	$1 \mathrm{m}^{2}$	1년	토지가격에 을 곱한 금		
	기 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 비 고

-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 7.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생략) 1. ~ 2. (생략) 3. <u>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u> <u>다</u>)이 지정・고시한 시장안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자치구청장</u>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 과 같음)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 세법 제41조 <u>각호의 1</u>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 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 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 3. (생략)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의 정수) ① (생략) ②제1항의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33 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도로가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자치구청장</u>
제8조(징수 교부금) 시장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u>구청장</u> 이 징수한 금액중 점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u>자치구청장</u>

현 행

【별 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		7]	준	단 위	점용료(단위:원)
					<u>'</u>				점용단	<u></u>	기간단위	1000(2772)
1.	전주· 화등	공중전 지상시	전주,			이와 유						900
	설불		변압 함,발/ 차메티 기타	t, 무선 신전용후 <u>가기</u> , 우 이와 유	전화/ 휴대전 체통, -사한	기지국, 종 화기지국 소화전, ` 것	등합유식 ,교통령 모래함	선방송용단자 5검지기, <u>주</u> , 제설용구함	1개		1년	<u>1,350</u>
			공중전	过화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경	₹				<u>36,150</u>
						- 유사한			점용면 1m²	년적 2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구 등 설물	·전력 지하매	수도관 관, 전 스관,	난, 배수 기관, ² 송열관	-관, 전기통 , 송우	농업용수 ·신관, 가 /관, 작업 통신구 것	지름	0.1 <u>미터</u> 이하				<u>550</u>
			구(맨: <u>기타</u>	홀), 전 이와 유	[력구, -사한	통신구 것	지름	0.1 <u>미터</u> 초과 0.2 <u>미터</u> 이하				<u>1,150</u>
							지름	0.2 <u>미터</u> 초과 0.4 <u>미터</u> 이하				<u>2,300</u>
							지름	0.4 <u>미터</u> 초과 0.6 <u>미터</u> 이하				<u>3,500</u>
							지름	0.6 <u>미터</u> 초과 0.8 <u>미터</u> 이하				<u>4,650</u>
							지름	0.8 <u>미터</u> 초과 1.0 <u>미터</u> 이하				<u>5,850</u>
							지름	1.0 <u>미터</u> 초과 2.0 <u>미터</u> 이하				<u>8,750</u>
							지름	2.0 <u>미터</u> 초과 3.0 <u>미터</u> 이하	길 0 1 <u>미</u> 日	이 <u>터</u>	1년	14,600
							지름	3.0 <u>미터</u> 초과				<u>20,450</u>
			<u>어스인</u> 유사한	<u> </u>	·거 기	타 이와	지름	0.1 <u>미터</u> 이하				<u>850</u>
							지름	0.1 <u>미터</u> 초과 0.2 <u>미터</u> 이하				<u>1,750</u>
							지름	0.2 <u>미터</u> 초과 0.4 <u>미터</u> 이하				<u>3,500</u>
							지름	0.4 <u>미터</u> 초과 0.6 <u>미터</u> 이하				<u>5,250</u>
							지름	0.6 <u>미터</u> 초과 0.8 <u>미터</u> 이하				7,000
							지름	0.8 <u>미터</u> 초과 1.0 <u>미터</u> 이하				<u>8,750</u>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점용단위	단 위기간단위	점용료(단위:원)
						지름	1.0 <u>¤</u>] 2.0 <u>¤</u>]	<u>터</u> 초과 <u>터</u> 이하	4801	기신인기	13,100
						지름	2.0 <u>¤</u>] 3.0 <u>¤</u>]	<u>터</u> 초과 <u>터</u> 이하	길 이 1 <u>미터</u>	1년	21,850
						지름	3.0 <u>¤</u>]	<u>터</u> 초과			30,600
3. 고 돌	광고탑·광 2판·간판(출간판을포 1한다)·사	광고탑 · 출간판을	광고 - - - - - - -	1판 · 기 함한디	간판(돌 -)	일시 (1월	설치 미만	한 것 점용)	표시면적	1일	<u>200</u>
함 설 성	[편 · 신전(:출간판을포 :한다) · 사 !안내표지 · !수막 · 아취					기		타	$1 \mathrm{m}^2$	1년	<u>58,950</u>
연 <u>기</u> 사	!두딱·야취 <u> 타</u> 이와 유 한 것		사	설	안 내	丑	지		1개	1년	49,100
			현·	수막		제사니 의 용 설치한	노로	교행사 일시	표시면적	1일	<u>150</u>
			_ , ,	7] [타의 -	용도	1 m²	_	<u>200</u>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1년	117,900	
			۰,	T1		기		타	1 m²	112	<u>58,950</u>
4. 차	주유소·주 -장· 여객 -장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 - 승강대· -물적치장·				1층	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소 화	와돌디미틸 자동차수리 :・승강대・ }물적치장・	7-1	건 :	축 물	2층	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1 º1	-게소 <u>기타</u> 와 유사한 설		_	, –		3층	인 건	축물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등 이성 건축들	당인 물	1111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	[도·궤도 <u>기</u>	<u>타</u> 이와	유시	하 것	j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ストラスト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u>기타</u> 이와 유 사한 것		건 :	축 물	<u>ı</u>	1층	인 건	축물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1	F번 것		신 '	폭 펼	<u>.</u>	2층	인 건	축물	$1 \mathrm{m}^2$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점 용	물 물 의	종 류	기 준 점용단위	단 위기간단위	점용료(단위:원)
		3층이상인 건축물	100 11	712 11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	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u>버스승차권판</u> <u>매 및 교통카</u> 드충전소, 생	버스승차권판미	내 및 교통카드충전소	<u>점용면적</u> 1m²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활정보지통합 배부대 기티	<u>생활정</u> 5	브지통합배부대	<u>1개</u>	<u>1년</u>	<u>1,350</u>
<u>이와 유사한 것</u>	<u>자동판매</u>	기, 상품진열대	<u>점용면적</u> 1m²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 벽・발판・대 기소등의 공 사용 시설 및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m²	1일	<u>200</u>
재료, <u>도로굴</u> <u>착부분 기타</u> <u>이와 유사 한</u> 것	7]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주차장 · 광장 · ·	ト는 사무소・점포・창 공원・ <u>체육시설 기타</u>	전욧면전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내지제9호외의공작 물 · 물 건	농업	및 식물재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및 시설	주	택	점용면적	1,3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구청장이 지정 차양시설	·고시한 시장안의	1 m²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7]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u>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m^2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m^2 이상 1m^2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m^2 또는 1m로 계산한다.
-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 8.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u>미터</u>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	ㄹ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심용물의 공	Т	점용단위	기간단위	(단위:원)
1. 전주 · 공중	전주, 가로등, <u>그 밖</u> •	▋ 이와 유사한 것			1,250
전화 등 지 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유선방송용단자함, 지국, 교통량검지기, 소화전, 모래함, 제설 와 유사한 것	발신전용휴대전화기 <u>주차측정기</u> , 우체통,	1개	1년	<u>1,850</u>
	공중전화,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36,150
	송전탑, <u>그 밖에</u> 이외	-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 전력구 등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지금 0.1111 이야			750_
지하매설물	공신단, 가스단, 궁설 과, 송유관, 작업구	지듬 0.1 <u>m</u> 조과 0.2m 이하			<u>1,600</u>
	(맨홀), 전력구, 통신 구, <u>그 밖에</u> 이와 유 사한 것	0.4 <u>m</u> 이하			3,150
	A C X	지름 0.4 <u>m</u> 초과 0.6 <u>m</u> 이하			4,850
		지름 0.6 <u>m</u> 초과 0.8 <u>m</u> 이하	길 이 1 <u>m</u>	1년	<u>6,400</u>
		지름 0.8 <u>m</u> 초과 1.0 <u>m</u> 이하			<u>8,050</u>
		지름 1.0 <u>m</u> 초과 2.0 <u>m</u> 이하			12,100
		지름 2.0 <u>m</u> 초과 3.0 <u>m</u> 이하			20,150
		지름 3.0 <u>m</u>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u>1,150</u>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_{\underline{m}}$ 초과 $0.2_{\underline{m}}$ 이하			2,400
		지름 0.2 <u>m</u> 초과 0.4 <u>m</u> 이하			4,850
		지름 0.4 <u>m</u> 초과 0.6 <u>m</u> 이하	-1 .1		7,250
		지름 0.6 <u>m</u> 초과 0.8 <u>m</u> 이하	길 이 1 <u>m</u>	1년	9,650
		지름 0.8 <u>m</u> 초과 1.0 <u>m</u> 이하			12,100
		지름 1.0 <u>m</u> 초과 2.0 <u>m</u> 이하			18,100
		지름 2.0 <u>m</u> 초과 3.0 <u>m</u> 이하			30,150
		지름 3.0 <u>m</u> 초과			42,250

	-1 4	.	.1 7	7		기 준	<u></u> 단 위	점 용 료
	점	방 물 ⁹	의 종	듀		점용단위	기간단위	(단위:원)
광고판,	광고탑, 광고판, 간판(<u>돌출간판을</u>				설치한 것 미만 점용)	표시면적 1m²	1일	<u>300</u>
간판(돌출 간판을 포	제외한	<u> </u>		기	타	표시면적 1m²	1년	81,350
함 한다)· 사설안내		<u>돌</u>	출	간	판	표시면적 1m²	1년	<u>38,950</u>
표지 · 현 수막 · <u>아치</u> ,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67,750
<u>그 밖에</u> 이와 유사 한 것	현	수	막		구 종교행사 도로 일시 것	표시면적	1일	200
				기티) 의 용도	$1\mathrm{m}^2$		<u>300</u>
	아		-]	도로횡단		표시면적	11.3	<u>162,700</u>
	아 치		시	기	타	1m² 1년		81,350
4. 주유소 · 주차장 · 여 객 자 동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차터미널 ・화물터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미널·자 동차수리소	신		芒	3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 승강대 · 화 물 적 치 장 · 휴게소				4층 이	상인 건축물	$1\mathrm{m}^{2}$	_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급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u>그 밖에</u> 이와 진 · 출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7]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7) () [7] (7 2 2	기준	 단위	점용.	豆	
	점용물의 종류	<u>-</u>	점용단위	기간단위	(단위:	원)
5. 철도・궤도	<u>그 밖에</u> 이와 유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4를	
6. 지하상가· 지 하 실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5를
·통로, <u>그</u> <u>밖에</u> 이와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7을
유사한 것		3층 이상인 건축물	<u>점용면적</u> 1m²	<u>1년</u>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9를
	공중 또는 지하여	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075를
	7] [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2를
7. 노점· <u>자동편</u> 매기·상품진	버스표판매대, 구	<u> </u>	점용면적	1년 -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자동판매기	기・상품진열대	1 m²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8. 공사용 판 자벽, 발판,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300
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기 타		1 _{m²}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창고・자동 유사한 것	등차주차장·광장·	하는 사무소·점포 <u>공원, 그밖에</u> 이와	점용면적 1m²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2를
10. 제1호 내 지 제9호 외의 공	<u>농업 및 식물재</u> 1 <u>물 위탁판매</u>	배, 어업 및 어획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을
작물·물 건 및 시설	주 택		점용면적	1,3	토지가격에 를 곱한 금	
	구청장이 지정 등 차양 또는 비가		1 m²	1년	토지가격에을 곱한 금	
	기 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 비 고

-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 7.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u>m</u>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u>m</u>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참고사항】

도로법

- 제40조 (도로의 占用)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目的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1995.12.6>
 -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 ⑤삭제 <1999.2.8>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전문개정 1970.8.10]
-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 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3.10, 1999.2.8>
 - ③삭제<1970.8.10>

도로법시행령

-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8.6>
 -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생략: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14]

관련법령

□ 도로법

-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 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삭제 <1999.2.8>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 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 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삭제<1970.8.10>
- 제75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로법시행령」

-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적합하게하여야 한다.
 - 1. 점용의 목적
 -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 3. 점용의 기간
 -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 5. 공사시설의 방법
 - 6. 공사의 시기
 - 7. 도로의 복구방법
 - 8. 삭제 <1999.8.6>
 -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④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 ⑤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 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3. 삭제 <1999.8.6>
 -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7. 삭제 <1999.8.6>

- 8.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 9.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
-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생략:별표2%>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생략: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 제36조의3 (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국 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도로법시행규칙」

- 제20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5. 삭제 <2005.12.28>
-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7.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8.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 제33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과 같다.
 -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1천원
 -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5천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1.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 : 수입인지
 - 2.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법」

-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김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②삭제 <1994.12.22>